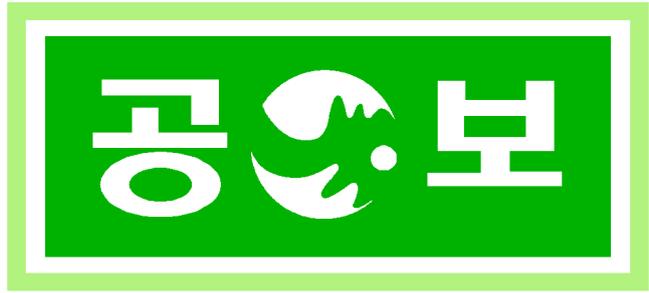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997 호 2016. 3. 3.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38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3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07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08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09호[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21호[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1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 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3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아랫울동2길 26-14(양정동)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3.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4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물동로길 26-14(양정동)	2016-03-03	물동은 법나무가 많아 법나무골이라. 이를 지어졌으므로 오름길도 물동으로 불리고 있고 주민들에 인근한 이름, 물동의 아래쪽을 명칭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86-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길 11(중산동)	2016-03-03	발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3	울산광역시 북구 시대동 247-2	울산광역시 북구 정화길 92(시래동)	2016-03-03	기존 자연마을인 정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면천지구 398 3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5길 12-6(진정동)	2016-03-03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불산시민이만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 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 3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12-6(진장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3. 03.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5길 12-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9B 3L	2016-03-03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6 - 207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1조)
- ‘제76조’ ⇒ ‘제91조’
- “도로”의 법률정의를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정의규정이 당연 적용되므로 삭제(제2조1항)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2조 (정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2,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71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2조)
 - ‘제2조제1항제4호’ ⇒ ‘제2조제2호’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2조 (정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2,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589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제2조제2호 -----.</p> <p>2.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 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처리 가능하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처리가능하므로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조례 폐지

3.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2,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70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221호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어린이보호, 방범, 재난,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 단속 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16년 도시공원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3. 행정예고 내용 : 다목적 CCTV 설치 장소

설치장소	설치지번	설치수량	운영부서	비고
6개소		23		
햇빛공원	중산동 1284-7	4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별빛공원	중산동 1285-7	3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달빛공원	중산동 1286-7	4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기령소공원	매곡동 산1-7	4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화동못수변공원	화봉동 324-3	4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흙골못수변공원	호계동 산35-1	4	안전정보과 (CCTV 통합 관제센터)	

4. 촬영범위 및 시간 : 100M이내 24시간
5. 예고기간 : 2016. 03. 03 . ~ 03. 23. (21일간)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공원녹지과
- 전 화 : 052)241-7942
- F A X : 052)241-793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